Ⅰ.총학생회 회칙

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학생회라고 칭한다.(이하 본 회)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신본주의, 복음주의, 아세아복음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경건을 도모하고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과 회원 간의 화합을 구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발전에 힘쓰며 나아가서 선교 중심적 정의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운영, 운영원칙) 본 회는 회원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원칙하에 본 회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된다.
제 4 조 (설치)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내에 둔다.
제 5 조 (회원의 자격)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상태에 있는 자와 징계 처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③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, 본회의 재정 그 밖의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.
④ 본회의 회원은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.
⑤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학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벌이나 불이익, 처벌 징계를 받지 않는다.
⑥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및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학생활동이 침해받게 될 경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.
제 7 조 (학교당국과의 관계) ① 본 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,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.
② 본 회는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.
제 8 조 (회의구성) 본 회의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, 전체학생대표자회의,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집행부, 각과학생회를 둔다.

제 2 장 학생총회

제 9 조 (지위)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.
제 10 조 (구성) 학생총회는 본 대학교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1 조 (권한)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칙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을 갖는다.
②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대한 사업보고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토의할 권한을 갖는다.
③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권을 갖는다.

④ 학생총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(국가재난상태, 학교비상상태, 학내사태 등) 학생총회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. (단, 전체학생대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위임한다.)
제 12 조 (의장)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② 총학생회장이 유고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소추 시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위원 중 1인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.
제 13 조 (소집) ①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.
② 학생총회는 매학기 2번 진행한다.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.
1. 제 1 학생총회는 개강 후 4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.
2. 제 2 학생총회는 종강 전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.
③ 정기총회는 회원 1/2이상의 참석, 임시총회는 회원 1/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. 단, 임시총회가 성립되지 못하면 예/결산안을 보고한다.
④ 임시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/3의 요구가 있거나 본 회원 2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의장의 거부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전체학생의 3/5이상의 발의를 얻어 이를 소집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시간 중에는 학교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휴강으로 한다.
제 14 조 (의결)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

제 15 조 (지위 및 명칭)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.
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.
③ 전학대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말한다.(이하 전학대회라 부른다.)
제 16 조 (구성) ① 전학대회는 본회, 본회 산하기구, 사생회, 동아리연합회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기구이다.
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.
1.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
2. 각 과 학생회의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
3. 사생회장, 사생회 총무
4. 동아리연합회장, 동아리연합회 총무
③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궐위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.
이 경우 해당단위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.
④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의결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전학대회의 2/3이상의 찬성 의결로 확정한다.
제 17 조 (의장)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.
②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.
③ 의장, 부의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전학대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.
제 18 조 (의무) ① 대의원은 전학대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
②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결석 사유서와 의결권 위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, 결석사유서와 의결권 위임서를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한다.
③ 결석 대의원의 의결권은 본 회의 대의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대의원이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결석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고 사과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.
④ 한 학기 별 4회 이상 결석한 대의원의 경우 재적대의원회에서 제한다.
제 19 조 (소집)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② 전학대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.
③ 전학대회의 임시회의는 대의원의 1/3이상의 요구, 의장의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.
④ 정기회의 소집과 상정 안건은 집회 5일전에 의장이 공고한다.
⑤ 임시회의 소집과 상정 안건은 집회 3일전에 의장이 공고한다.
⑥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총학생회장이 직권으로 비상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0 조 (업무 및 권한) ① 학생총회의 결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.
② 그 외 전체학생의 중요사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권을 가진다.
③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을 학교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.
④ 본 회의 활동 방향 및 각 기구의 사업계획을 심의·의결 한다.
⑤ 회칙, 세칙 개정의 심의 및 의결한다. 단, 세칙에 관한 사항은 「제9장 회칙개정」에 준한다.
⑥ 본 회의 예·결산 심의 및 인준한다.
⑦ 본 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.
⑧ 본 회의 기구 인준 및 기본 체계 수정과 신설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.
⑨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⑩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·의결 및 학생회비의 책정 및 인준 할 수 있다.
⑪ 전학대회는 집행부 및 각 과 학생회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⑫ 전학대회는 집행부 및 각 과 학생회 부서에 대하여 서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⑬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⑭ 특별기구의 인준·심사 및 해소할 수 있다.
⑮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.
⑯ 졸업준비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주관 하에 공고문을 통해 선출한다. (단, 졸업준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에 해당 년도 전학대회에서 1명, 총학생회에서 1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한다.)
제 21 조 (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) 전학대회의 회의 운영은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.
제 22 조 (의사 및 의결) ①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의안은 재적의원 1/3 이상의 요구 또는 전체학생의 1/3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될 수 있다.
③ 정기 전학대회와 임시 및 비상 전학대회는 출석의원의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한다.(단, 회칙개정 및 회장단 불신임과 관련된 사안은 별도로 마련된 관련 조항에 의거한다.)

제 4 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

제 23 조 (지위 및 책임) ①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각종 대회 활동을 관장하고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학생활동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업무의 성격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.
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활동 및 모든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당국의 해당 심의 회의에 학생대표자로서 참석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④ 총학생회장은 대학 평의원회 의원이 된다.
제 24 조 (임기 및 자격)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12월 기말고사기간 종료 다음날 부터 다음 해 12월 기말고사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
제 25 조 (선출) ①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선출한다. (직접 비밀선거)
② 선출은 총학생회 선거법에 따른다.
제 26 조 (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)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한다.
③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결의 된 사항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, 그 직무를 민주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.
④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계획,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⑤ 총학생회장은 집행부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지며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결제한다.
⑥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⑦ 총학생회장의 유고시 부총학생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전학대회의 2/3출석과 만장일치로 의원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 한다.
제 27 조 (신분보장)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.

제 5 장 집행부

제 28 조 (역할) 집행부는 본 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최고 행정기구이다.

제 1 절 부총학생회장

제 29 조 (지위 및 책임) 부총학생회장은 집행부의 의장이 되며, 총학생회장의 유고시 그 직위와 책임을 갖는다.
제 30 조 (임기 및 자격) ①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과 같다.
제 31 조 (선출) ①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선출한다.
② 선출은 총학생회 선거법을 따른다.

제 32 조 (업무 및 권한) 집행부 내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총괄한다.

제 2 절 집행부회의

제 33 조 (권한 및 구성) ① 집행부회의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과 시행을 심의한다.
② 집행부회의는 부총학생회장, 총무, 사무국장, 재정국장으로 구성한다.
③ 부총학생회장은 집행부회의의 의장이 되고, 총무는 부의장이 된다.
제 34 조 (의무) 다음 사항은 집행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① 행정각부의 기본계획
② 선전 및 학생활동, 기타 중요한 대외 계획
③ 행정각부 예산안·결산, 총학생회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, 총학생회 자금에서 부담하게 될 계획들,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
④ 행정각부의 중요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정
⑤ 부총학생회장·총무 또는 총무부 이하 부서장이 제출한 사항

제 3 절 총무

제 35 조 (임명 및 권한) ① 총무는 부총학생회장의 제청으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② 총무는 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, 행정각부를 총괄한다.
③ 부총학생회장의 유고시 총무는 집행부에 관한 직위를 대신한다.
제 36 조 (임기 및 자격) 총무의 임기는 부총학생회장과 같다.

제 4 절 재정국

제 37 조 (임명) 재정국장은 총무의 추천과 부총학생회장의 제청으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제 38 조 (구성원) 재정국장, 재정국 차장으로 구성한다.
제 39 조 (업무) 집행부의 재정 정책 수립 및 총괄,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, 학생회 분할금 따위에 관련된 제반 사무를 맡아보며 회칙 제 7장의 기준에 따른다.

제 5 절 사무국

제 40 조 (임명) 사무국장은 총무의 추천과 부총학생회장의 제청으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제 41 조 (구성원) 사무국장, 사무국 차장으로 구성한다.
제 42 조 (업무) ① 총학생회 내의 모든 문서를 기록, 관리하며 유지한다.
② 사무국은 당회기 년도 결산이후 총학생회 총서를 편찬하여 모든 기록을 남긴다.
③ 사무국장은 전학대회의 서기로 참석하여 회의록, 공문, 공지를 기록 관리하며 유지한다. 부득이 국장이 참여할 수 없을 시 사무국 차장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.

제 6 절 행정각부

제 43 조 (임명) 행정각부의 장은 총무의 추천과 부총학생회장의 제청으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제 44 조 (권한) 총무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사무에 관하여 규정이나 부총학생회장의 직권

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.
제 45 조 (구성) 총학생회장이 집행부와 의논하여 4개의 부서를 설치·조직한다. 각 부서는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된다.

제 6 장 각 과 학생회

제 46 조 (지위) 각 과 학생회는 각 과의 최고학생자치기구이다.
제 47 조 (구성) 각 과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학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.
제 48 조 (시행규정) ① 각 과 학생회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각 과 학생회칙에 따른다.
② 상기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편적 규례에 따른다.

제 1절 회장 및 부회장

제 49 조 (권한 및 구성) ① 각 과 학생회장은 각 과를 대표하여 부회장과 공동으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.
② 각 과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③ 각 과 내에서 본 회의 회칙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④ 각 과 학생회장은 전학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계획,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2절 임원

제 50 조 (구성) ① 각 과 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.
제 51 조 (임명) ① 총무, 회계, 서기는 부학생회장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② 각 학년 부장은 각 학년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임명된다.

제 1 관 학년부장

제 52 조 (의무 및 권한) ① 각 학년 부장들은 학생회장의 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7 장 재정

제 53 조 (경비) ① 본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② 총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거나 재정국으로 납부한다.
③ 총학생회비 중 2/3인 집행부 재정의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.
④ 총학생회비 중 1/3인 각 과 학생회의 재정의 인출 및 집행은 해당 학과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.
제 54 조 (회계연도)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.
② 전 항의 회계연도는 1기로 나누어 집행하며 각기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.
제 55 조 (예산의 편성, 심의) ① 본 회의 학생회비 중 2/3는 집행부에서 편성 책정하여 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에 상정한다.
② 본 회의 학생회비 중 1/3은 학과 학생회에서 편성 책정하여 각 과 학생회장이 전학대회

에 상정한다.
③ 전학대회는 상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심의, 확정하여야 한다.
제 56 조 (예산집행) ① 본 회의 예산은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.
② 예산의 집행시에는 사용부서에 사용한 내용을 재정국에 보고하고 재정국에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경비를 기록한다.
제 57 조 (결산보고) ① 결산보고는 학기별로 나누어 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.
② 1학기 결산보고는 당선된 12월 기말고사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1학기 제 2 학생총회 시까지, 2학기 결산보고는 1학기 제 2 학생총회 이후부터 2학기 제 2 학생총회 시까지 한다.
③ 재정국은 총학생회의 결산을 종합하여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.
④ 각 과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에 해당하는 각 과 학생회의 결산을 종합하여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.
⑤ 전학대회에서 통과된 결산 중 총학생회는 해당 학기 말 결산보고를 통해,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기말 학과 종강학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고한다.
⑥ 결산안 보고는 매학기에 보고해야 하며, 기간은 종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. (단, 결산보고 전에 모든 사업은 종료되어야 한다.)

제 8 장 선거관리

제 58 조 (선거방법) 본 회의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 선거로 한다.
제 59 조 (선거시기) ① 전체학생대표자(총학생회 및 각 과 학생회)선거는 11월 셋째주, 3일간 실시한다.
제 60 조 (구성) ① 선거와 학생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선거관리위원회(이하선관위)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총학생회 대표자 1인(집행부 및 행정각부)과 추천인 2명, 학생회장단에서 임명하는 학과 학생회 대표자(학과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) 1인과 추천인 2명, 총 6명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다.
③ 선관위는 1학기 종강 전 20일 이내에 구성하고 임기는 그 일로부터 선거기간까지로 한다.
④ 선거에 관한 모든 시행은 총학생회 선거법에 의한다.
⑤ 선관위는 선거법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·학생투표관리 또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제 61 조 (권한) 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학생투표사무에 관하여 집행부 내의 행정부서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② 제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제 62 조 (책임) ① 선거 운동은 선관위의 선거법 범위 안에서 하되,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.
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선거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제 63 조 (보궐선거) ① 총학생회장이 궐위하거나, 학생총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, 잔임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

거를 실시한다. 단, 잔임기간이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학생회장도 궐위되었을 시에는 제 4장 24조 7항에 준하여 그 역할을 대행한다.
② 보궐 선거시에는 전학대회에서 선관위를 임시로 구성한다.

제 9 장 회 칙 개 정

제 64 조 (발의) 본 회의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① 총학회장의 발의
② 전학대회의 발의
③ 회원 ½ 이상의 발의
제 65 조 (의결 및 발효) ① 회칙개정의 발의 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연다.
② 회칙개정을 위한 총회의 소집은 학생총회를 따른다. (단, 학생총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로 위임 되었을 경우 총회의 소집은 전체학생대표자회를 따른다.)
③ 회칙개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은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다. (단, 학생총회가 전체학생대표자회로 위임 되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은 전체학생대표자회를 따른다.)
④ 개정된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3일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10 장 부 칙

제 66 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.
제 67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1호 (제정 1985.8 총 16장 68조)
제정된 회칙은 1985년 8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68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2호 (개정 1987.10 총17장 47조)
개정된 회칙은 1987년10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69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3호 (개정 1996.12)
개정된 회칙은 1996년12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0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4호 (개정 1996.12)
개정된 회칙은 1996년 12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1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5호 (개정 2003.9)
개정된 회칙은 2003년 9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2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6호 (개정 2006.4)
개정된 회칙은 2006년 4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3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7호 (개정 2012.6 총 9장 45조)
개정된 회칙은 2012년 6월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4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8호 (개정 2012.12.13. 총10장 72조)
개정된 회칙은 2012년 12월 13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5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9호 (개정 2013.4.5. 총10장 75조)
개정된 회칙은 2012년 4월 5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6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10호(개정 2014.4.2. 총10장 75조)

개정된 회칙은 2014년 4월 2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7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11호 (개정 2019.12.7. 총10장 77조)
개정된 회칙은 2019년 12월 7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8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12호 (개정 2020.6.15. 총10장 78조)
개정된 회칙은 2020년 6월 17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79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13호 (개정 2020.10.5. 총 10장 79조)
개정된 회칙은 2020년 10월 7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제 80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 14호 (개정 2020.12.7. 총 10장 80조)
개정된 회칙은 2020년 12월 8일로 공포하며, 공포 즉시 시행한다.

Ⅱ. 동아리연합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라고 칭한다. (이하 본 회)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올바른 대학생활 증진과 ACTS학생들의 달란트를 발휘 및 개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체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뤄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.
제 3 조 (운영, 운영원칙) 본 회는 회원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원칙하에 본 회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된다.
제 4 조 (회의 구성과 자격)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해당학기에 학교의 행정 절차를 거쳐 승인된 동아리 및 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. 단, 휴학상태에 있는 자와 징계 처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제 5조 제 4조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활동보고서를 학기 초, 학기 말, 매월 작성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에게 제출하고 회장단은 활동보고서를 취합해 학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제 2 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

제 6 조 (지위 및 구성)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(본 위원회)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본 위원회는 회장, 장들이 임원이 되어 구성된다. 총무, 서기, 회계, 제 4 조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장들이 임원이 되어 구성된다.
제 7 조 (회장) 본 위원회의 회장은 제 4 조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,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고 본 위원회 의장이 된다.
제 8 조 (회장의 의무 및 권한) ①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 위원회의 총무, 서기, 회계(이하 회장단)를 임명할 수 있고 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② 회장단은 제 4조에 해당하는 동아리로부터 동아리연합회 운영금에 대한 회비를 걷을 수 있다.
③ 회장단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금을 각 동아리의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활동성이 활발한 동아리에게 차등분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집행된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거쳐 제 4조에 해당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.
제 9 조 (회장의 임기) 임기는 당해 2학기 종강일부터 다음 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하며, 본 위원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. (전년도 회장단이 다음해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모임을 소집한다.)
제 10 조 (운영위원회 임원 권한)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회장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.

Ⅲ. 총학생회 선거법

제 1 장 선거 시행 세칙

제 1 조 (자격)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.
제 2 조 (피선거권)
①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
② 각 학과 학생회장, 각 학과 부학생회장
제 3 조 (입후보자 등록자격)
① 4학기 등록을 필한 자 (단, 각 학과 부학생회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한자)
② 전체학기 성적의 평점이 2.5이상인 자
③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지 않은 자
④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. 각 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.
⑤ 전체학기의 경건생활점수가 pass 혹은 전체학기 중 한 학기만 sp 인 자. (단, sp인 학생은 소견서 제출과 담당 교수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. 또한, 선관위의 판단 하에 소견서와 담당 교수님의 추천서를 공개할 수 있다.)
제 4 조 (선출)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공동입후보 해야 되며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(직접 비밀선거)
② 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동표일 경우,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가 당선된다.
③ 단독후보일 시,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된다.
④ 당선자가 없을 시, 전학대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.

제 2 장 선거관리 위원회

제 5 조 (구성) 총학생회 대표자 1인과 추천인 2명, 학생회 대표자 1인과 추천인 2명, 총 6명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명하여 선출한다.
제 6 조(업무 및 권한)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갖는다.
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
② 선거인 명부의 작성
③ 선거 홍보용 벽보 작성
④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
⑤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
⑥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
⑦ 재선거여부 결정
제 7 조 (공고) ①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.
②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.
제 8 조 (개최 및 의결) 선관위는 재적위원의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입후보자 등록

제 9 조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14일 전에 선관위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0 조 (등록서류) ① 전체학생대표자의 입후보 등록원서
② 러닝메이트 및 가회장단 등록원서
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. 각 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.
④ 입후보 목적 설명서
⑤ 재학증명서
⑥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

제 4 장 투표 및 개표

제 11 조 (투표 및 개표)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관위 위원장이 관리하여 선관위 위원이 실시한다.
제 12 조 각 입후보자는 투표 및 비공개 개표장에 참관인 1인과 함께 입회한다.
제 13 조 (투표용지)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제작, 선관위의 검인을 필한 용지를 사용한다.
제 14 조 (투표함) 투표함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것으로 한다.
제 15 조 (무효 표) 다음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.
①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②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
③ 기표가 불분명하거나 규정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. 단, 이것의 판명은 선관위에서 한다.

제 5 장 선거운동

제 16 조 (유세) 입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동 유세와 개인 유세를 갖는다.
① 합동유세 : 선관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합동유세와 개인유세를 갖는다.
② 개인유세 : 유세기간 중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입후보자가 개인별로 유세할
제 17 조 (홍보) 홍보는 벽보, 현수막, 기타 유인물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제 18 조 (금지) 선거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, 금품수수, 접대, 폭행, 협박, 상대입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금한다.
제 19 조 (비용) 선관위에 필요한 비용 중 합동유세에 필요한 비용은 총학생회가 이를 부담한다.

제 6 장 입후보 취소 및 당선 취소

제 20 조 (입후보 또는 당선 취소)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취소하거나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다.
① 등록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

② 선거법을 위반한 자
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
④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
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

제 21 조 (이의신청)

①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선 공고 후 선관위에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전 항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2장 7조에 의해 그 당선을 취소 할 수 있다.

제 7 장 부칙

제 22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선거법 제1호 (제정 1985.8 총 5장 21조)
제 23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선거법 제2호 (개정 1987.10 총 5장 21조)
제 24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선거법 제3호 (개정 2006.4 총 5장 21조)
제 25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선거법 제4호 (개정 2012.12.13. 총 7장 25조)
제 26 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학생회 선거법 제5호 (개정 2020.10.05. 총 7장 26조)

Ⅳ. 비상대책위원회

제 1조 (지위)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기간동안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.
제 2조 (권한)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원들은 총학생회 임원들의 권한 중 최소한의 업무 권한을 갖는다.
① 전체 학생회 임원 L.T
②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
③ 필요에 따른 업무 권한
제 3조 (의무)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제 4조 (구성)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.
①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
②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될 때
③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될 때
제 5조 (구성원)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 뽑힌 전체학생대표자회 임원들로 구성한다.
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구성한다.
② 비상대책위원회장, 부비상대책위원장, 총무, 사무국장, 재정국장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각 국원을 정할 수 있다.

Ⅴ. 졸업준비위원회 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 본 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라고 칭한다. (이하 본회)
제 2조 (목적) 졸업준비위원회는 4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4학년들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독려하고 대학생활 동안 느낀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그 취지가 있다.
제 3조 (운영, 운영원칙) 본 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원칙하에 본 회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된다.
제 4조 (회의 구성과 자격)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로 구성한다.

제 2장 졸업준비 운영위원회

제 5조 (지위 및 구성) ① 졸업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(본위원회)는 졸업준비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본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서기, 회계로 구성한다.
제 6조 (위원장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자로 선출하며, 위원장은 졸업준비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위원회 의장이 된다.
제 7조 (지원 자격) 본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.
① 4학기 등록을 필한 자
②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지 않은 자
제 8조 (위원장의 의무 및 권한) ① 위원장은 졸업준비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위원회의 부위원장, 서기, 회계(이하 회장단)를 임명할 수 있고 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② 회장단은 졸업준비위원회에 관련된 회칙과 예산 편성 및 사업에 대한 재정을 전체학생대표자회에 건의 할 수 있다.
③ 회장단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2학기말 결산 보고 때 재학생 모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.
제 9조 (회장의 임기) ① 임기는 당해 1학기 졸업식 이후부터 다음해 졸업식까지로 하며, 제 6조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 (단, 지원자가 없을 경우 총학생회 1명과 전체학생대표자회에서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.)
제 10조 (감사위원회 임원 구성 및 권한) ①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부회장과 전체학생대표자회 대의원 중 1명으로 구성한다.
② 감사위원회 임원들은 위원장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.
③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전체학생대표자회에서 집행하며 감사위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에 참석하여 탄핵에 대한 발의와 변호할 의무를 갖는다.